

古文書を 통해 본 조선후기 文集 刊行 과정상의 紛爭

- 安邦俊의 저술 『隱峯全書』를 중심으로 -

Conflict in the Process of Late Chosun Dynasty Anthology
Publication Found in Antique Documents

- Focus on the *Eunbong Collection* of Ahn Bang Joon -

조 정 곤 (Cho, Jung-Gon)*

◁ 목 차 ▷

- | | |
|-----------------------|------------------|
| 1. 序 言 | 3. 간행 과정상의 분쟁 |
| 2. 안방준 생애와 『은봉전서』의 간행 | 4. 맺음말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조선후기 문중에서의 문집 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 대상 가문은 전라남도 寶城에 세거한 竹山安氏 安邦俊 後孫家이며 대상 자료는 안방준의 저술인 『隱峯全書』를 비롯하여 중가에 소장된 古文書を 중심으로 하였다.

우선 안방준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의 저술 및 간행활동을 비롯하여 문집인 『은봉전서』가 간행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안방준은 도학과 충절이라는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배경으로 임진왜란 및 두 차례의 호란과 관련된 저술과 당쟁 사실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그의 저술은 1773년(英祖 49) 안방준의 후손 安昌賢에 의해 『牛山先生集』으로 간행되었고 1836년 安壽祿에 의해 『牛山先生集』에 수록되지 못한 안방준의 저술을 합하여 『은봉전서』를 편차하였다.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당시 보성군수로 부임한 俞建煥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1864년(고종 1) 안방준의 9대종손인 安永煥에 의해 『은봉전서』가 간행되었다.

다음으로 『은봉전서』의 간행 과정에서 1864년(고종 1)과 1867년(고종 4) 두 차례 발생한 분쟁에 대해 서술하였다. 1864년(高宗 1)에는 문집간행소인 대계서원에서 각 가문에 간행비용을 배정하였으나 이를 수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에 청원하여 비용을 거두고자 하였다. 이 사례들은 각각 개별적이지만 간행비용을 수렴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지방관이 큰 역할을 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1867년(고종 4)에 발생한 분쟁은 1863년에 우봉과의 한 지파의 일원이 『은봉전서』의 서발문에 기재된 종손의 이름을 통해 자신이 거짓으로 행했던 종손 행세가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 주판을 훔쳐 달아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간행장소가 대계서원과 牛峯村舍 두 곳으로 分所되어 문집이 합질을 이루지 못한 채로 간행되었고 결국 배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문집간행소는 합질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관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결국 그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과 박사과정(myidrook@naver.com)

접수일: 2015년 6월 10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처분을 받아들여 전국 각지에 배포하였다. 이 분쟁을 통해 당시에 종손이 누구인지 종가의 지위를 두고 문집이 매개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要語: 죽산안씨, 안방준, 문집, 『은봉전서』, 분쟁, 간행비용, 합질, 배포

<ABSTRACT>

This study is an example of conflict occurred during the publication of family anthology at one of families in late Chosun dynasty. The object family of this study was the descendent line of Ahn Bang Joon who was the Ahns of Jooksan residing in the Bosung, Jeollanam-do and the object material of the study was concentrated on the ancient documents that owned by the main family including *Eunbong Collection* of Ahn Bang Joon.

First, after looking at the life history of Ahn Bang Joon briefly, the process of publishing the *Eunbong Collection* has been explained which is an anthology as well as his writing and publishing activity. Ahn Bang Joon did various writing activities including the works related to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known as Imjin war and 2 times of Manchu war as well as the party strifes based on his academic background such as ethics and royalty. His works was published by Ahn Chang Hyun who is his descendent in 1773 as the name of *Woosan collection* and the *Eunbong Collection* was published in 1836 by Ahn Soo Rok with collecting all works together that were not listed in *Woosan collection*. Later, based on this, the *Eunbong Collection* was published in 1864 by Ahn Young Hwan who is the 9th generation of Ahn Bang Joon with active assists from Yoo Gun Hwan who was a governor of Bosung county at that time. Second, two conflicts were described which happened in 1864 and 1867 during publication of *Eunbong Collection*.

Second, two conflicts were described which happened in 1864 and 1867 during publication of *Eunbong Collection*. Second, two conflicts were described which happened in 1864 and 1867 during publication of *Eunbong Collection*. The conflict happened in 1867 was touched off by a person from one of branches of Woobong party who stole the main edition and ran away because he was afraid of disclosing that he pretended to be a main family due to the preface that mentioned about the name of main family's person. Because of this, the publication center were divided into two places, Daegye lecturing hall and Woobongconsa, and the anthology was published without integration and there were difficulties to distribute it. The anthology publication center requested several times to government authority to distribute the integrated edition and eventually the appeal was accepted and the integrated could be distributed to all over the country. Through this conflict, it was understood that there were conflicts occurred with respect to the person and the position of the head family with anthology as a medium.

Key words: the Ahns of Jooksan, Ahn Bang Joon, *Eunbong Collection*, Conflict, Publication expenses, Integration, Distribution

1. 序 言

조선시대 문중에서 간행한 서적의 대부분은 선조의 저술 및 업적과 관련된 글을 모아서 간행한 문집이라 할 수 있다. 문중에서의 문집 간행 활동은 단순히 선조의 글을 수집·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 조상을 현양하고 나아가 그 가문의 위상을 드러내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조선후기 문중의 문집 간행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을 잘 반영한다.

그간 문집의 간행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는데 조선시대에 간행된 문집의 규모와 시기별 특징을 살펴본 연구와¹⁾ 지방관이 문집을 간행하는 활동을 통해 물력의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방관과 피전자와의 관계 및 문집을 간행하는 인식이 어떠했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²⁾ 또한 한 가문의 고문서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문집 간행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분석한 연구³⁾ 및 문집 교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⁴⁾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보성을 포함하여 호남지방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문집의 인출에 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⁵⁾ 이러한 연구는 문집의 간행을 비롯하여 출판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문집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상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집의 간행이 간단한 사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간행 시작 단계에서 배포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되기

1)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특히 조선시대의 문집 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39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12)

2)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 문집 간행,” 『영남학』 15(2009. 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3) 류탁일, “성재선생문집 간행의 출판사회학적 분석,” 『한국문화연구』 3(1990. 12). ; 손계영, “성재선생문집간소용하기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고문서연구』 제46호(2015).

4) 장원연, “조선시대 개인문집의 간행과 교정,” 『서지학보』 34(2009. 12). 한국서지학회.

5) 옥영정, “地方木活字에 의한 文集의 印出에 관한 一考 - 湖南地方을 중심으로 -,” 『서지학보』 26호(2002). 한국서지학회.

때문에 실제 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집을 간행하려면 우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문집을 간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중 내부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어야 했다. 또한 문중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이를 위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문중의 구성원들에게 통문을 작성하여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수반되었다. 결국 문중 내부에서 간행을 주도하는 자와 종원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문집의 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간행의 시작과 마무리 단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문집 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한 사례를 安邦俊(1573~1654)의 저술인 『隱峯全書』의 간행과 관련된 고문서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안방준은 호남지역의 학자로서 朴光前(1526~1597)과 成渾(1535~1598)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양란 시기에는 의병을 주도하였다. 그는 일생에 적지 않은 글을 저술하였다. 이 가운데 몇 편의 글은 후손의 주도로 1773년 『牛山先生集』으로 간행된 바 있고 1836년 『우산선생집』에 포함되지 않은 저술까지 포함하여 『은봉전서』의 편찬을 완성하였고, 이 문집은 1864년(고종 1)에 보성군수로 부임한 유건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대계서원에 문집청을 설치하여 간행되었다.

그러나 문집을 간행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1864년(고종 1)과 1867년(고종 4) 문중 내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1864년(고종 1)에는 주로 간행비용을 거두지 못해서 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발생한 분쟁이며 1867년(고종 4)의 경우는 간행장소가 분소되어 간행은 되었지만 완전한 합질을 이루지 못하여 배포할 수 없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라남도 보성 옥암면 택촌에 안방준의 종손이 거주하는 은봉종가에 소장된 고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⁶⁾

6) 한국학자료센터(<http://www.kostma.net/>)에서 보성 택촌 죽산안씨 은봉종가에 소장된 고문서를 비롯하여 안방준 후손가인 보성 검백 죽산안씨 송촌가, 보성 복내죽산안씨 죽곡정사, 순천 죽산안씨 송매정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문집 간행의 분쟁과 관련된 고문서

번호	문서명	발급일자	발급자	수취자
1	稟目	1864년 1월	大溪書院文集所	寶城郡守
2	稟目	1864년 2월	大溪書院文集所	寶城郡守
3	稟目	1864년 3월	大溪書院文集所	寶城郡守
4	稟目	1864년 4월	大溪書院文集所	寶城郡守
5	稟目	1864년 5월	大溪書院文集所	寶城郡守
6	稟目	1864년 6월	大溪書院文集所	寶城郡守
7	稟目	1864년 9월	大溪書院文集所	寶城郡守
8	上書	1867년 2월	安樞·安樞·安相等	暗行御史
9	所志	1867년 2월	安珪煥 安明煥 等	寶城郡守
10	單子	1867년 2월	安永煥	寶城郡守
11	上書	1867년 2월	安樞 安樞 安相等	暗行御史

이 자료들은 모두 所志類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上書·單子·所志·稟目이다. 품목은 1864년(고종 1) 『은봉전서』를 간행할 당시에 경제적인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작성된 문서이다. 그 내용은 각 가문에 배정한 간행비용을 거두지 못하여 大溪書院文集所에서 보성군수에게 청원하는 것이다. 이 문서의 내용은 간행비용을 거두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의 협조를 받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관과 문집 간행 주체와의 관계 및 문집을 간행하는 데 지방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상서와 소지 및 단자의 경우는 모두 1867년(고종 4) 2월에 작성된 것이다. 이 고문서들은 『은봉전서』의 간행과 배포 과정에서 간행장소의 分所와 문집의 分帙 및 배포와 관련된 분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문집을 배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문집을 매개로 종가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가문의 노력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위의 두 분쟁 사례는 문집을 간행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종가와 지파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 조선후기 문중의 문집 간행의 생활상과 출판문화의 일면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2. 안방준 생애와 『은봉전서』의 간행

2.1 안방준의 생애와 저술⁷⁾

隱峯 安邦俊은 1573년(선조 6) 11월에 보성군 오야리에서 安重寬(1524~1597)과 진원박씨 사이에서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8살 되던 해에 계부인 安重敦(1541~1565)의 양자로 들어갔으며 11세 때에 竹川 朴光前(1526~1597)의 문하로 들어가 수학하였다. 박광전은 보성출신의 학자로 梁應鼎(1519~1581)과 李滉(1501~1570)의 문인이며 柳希春(1513~1577)의 천거를 받은 인물이다. 14세 때에 자부인 朴宗挺(1555~1597)에게 수학하였고 19세에는 과주로 가서 成渾(1535~1598)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92년(선조 25) 20세가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박광전과 의병을 일으켰으며 松江 鄭澈(1536~1593)의 막하에서 국가의 기무를 논하였다.

인조가 즉위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金瑬(1571~1648)에게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인재의 등용과 군병의 확충 수령의 탐학 방지 등과 관련된 당시 현안을 바로잡을 방안을 글로 적어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잇달아 童蒙敎官, 司圖署別提, 鰲樹道察訪 등을 벼슬을 임명받았지만 오수도에서 19일 동안 부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이후 정묘호란 때에는 의병을 이끌고 세자가 있던 전주의 分朝로 가서 李元翼(1547~1643)과 계책을 논의하였고 병자호란 때에는 도내에 격문을 보내 寶城, 長興, 綾州, 羅州 등지에서 수백 명의 의병을 규합하여 함께 복진하였다.

7) 안방준의 생애와 저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고를 참고하였다.

이해준, “은봉선생의 생애와 저술,” 『국역 은봉전서』 (보성문화원, 2002). ; 조선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도록, “안방준의 생애와 사상,” 『선비 안방준, 도를 묻고 의를 행하다』 (조선대학교 박물관, 2010).

그는 인조대에 李廷龜(1564~1635)·張維(1578~1638)·吳允謙(1559~1636)·趙翼(1579~1655)·宋時烈(1607~1689)·金瑬 등 조정의 대신들과도 깊은 교류를 하였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전달하기도 하고 노론계 인사들과 처지를 같이 하면서 논변에도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안방준의 만년에 조정으로부터 典牲署主簿(1639), 刑曹佐郎(1644), 宗廟署令(1645), 工曹佐郎(1649), 司憲府持平(1649), 司憲府掌令(1651), 工曹參議(1653)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능주군 한천면 매화정에 隱峯精舍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안방준의 저술활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그가 저술한 글의 내용은 국난을 당했을 때의 그 상황과 충절을 행한 인물에 대한 기록, 그리고 당시 조정의 당쟁과 관련된 사안 등이 주를 이룬다.

그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와 관련된 많은 저술을 시작하였다. 15세 때 왜적의 노략질에 대항하여 싸우다 전사한 녹도만호 이대원의 행적을 기록한 『李大源傳』을 저술하여 충절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24세가 되던 해에 진주성전투의 상황과 충절인물을 기록한 『晉州敍事』를 저술하였다. 1611년 39세 때에 안방준이 3년 동안 서울로 올라가 생활하고 있었는데 41세 때에 重峯 趙憲(1544~1592)의 사적과 유문을 수집하여 유집으로 글을 모아 『抗義新編』(1613)을 편찬하였다. 보성으로 내려온 이후 43세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한 16명의 유사와 행적을 열거한 『湖南義錄』을 저술하였고 이 책은 51세가 되던 해에 간행되었다. 그 이후 노년에는 『壬辰忠節事蹟』·『露梁記事』·『壬辰記事』 등을 저술하였다.

안방준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저술 이외에도 당쟁 및 학문과 관련하여 다양한 저술과 간행활동을 하였다. 1622년(광해군 14) 50세에는 趙憲(1544~1592)의 상서문을 엮어 편찬한 『東還封事』를 간행하였고, 1632년(仁祖 10) 60세에 성혼의 『爲學之方』을 판각하여 간행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1635년(仁祖 14) 63세 때에 당쟁의 자료들을 모아 『混定編錄』을 저술하였다. 『混定編錄』은 1575년(선조 8)부터 1650년(孝宗 1)까지 약 70여 년간에 걸친 조야의 시시비비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편집하고 정리한 내용이다. 1642년(仁祖 20) 70세에 기묘사화로 사사당한 趙光祖(1482~1519)에 관한 내용인 『己卯遺蹟』을 편찬하였다. 다음해에는 정철이 鄭汝立(1546~1589) 사건 때 추관으로서 동인에게 배척당한 사실을 변론하는 『己丑記事』를 지었다.

안방준은 16세 때 향시를 보려고 하였지만 과장의 혼잡함을 보고 관리의 길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그는 40대 이후에는 보성에 지내면서 위와 같이 다양한 저술 및 간행활동을 하였다.

이상으로 안방준의 생애와 저술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일생 대부분을 보성에 거주하면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기사를 비롯하여 당시 조정의 정치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저술하였다.

2.2 『은봉전서』의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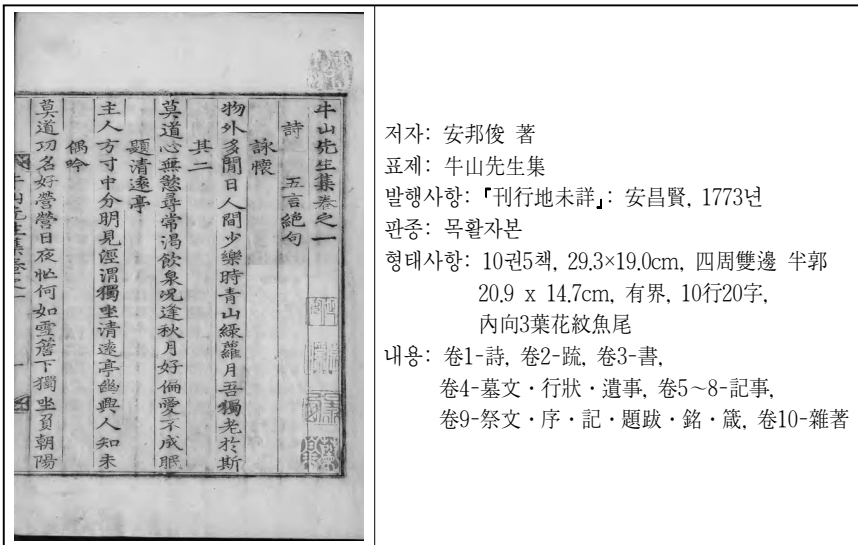
『은봉전서』의 간행에 대한 서술에 앞서 먼저 간행을 주도했던 가문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전라남도 寶城 宅村에 거주했던 竹山安氏에 가문은 안방준의 5대조인 安民이 長興에서 寶城으로 입향하면서 그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거주하게 되었다. 안방준은 1573년(선조 6)에 보성을 우산리에서 태어났는데 경주정씨와 혼인하여 5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 다섯 아들은 각각 분파되어 宅村派・玉坪派・同福派・梅亭派・牛峯派로 구분된다. 택촌파와 옥평파는 보성에 거주하였고 동북파는 동북에 매정파는 화순에 그리고 우봉파는 순천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파는 택촌파와 우봉파이다. 택촌파와 우봉파는 안방준의 저술을 간행하려고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봉파의 안방준 5대손 安昌賢은 1773년(영조 49)에 『牛山先生集』을 간행하였고 후에 6대손인 安壽祿이 1864년(고종 1) 『은봉전서』의 간행을 위해 그 내용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택촌파의 安永煥은 안방준의 9대 종손으로 1864년(고종 1) 대계서원에서 『은봉전서』를 간행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다음으로 『은봉전서』의 간행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자. 『은봉전서』는 1864년

(고종 1)에 안방준의 모든 저술을 최종적으로 간행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몇 차례 편간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간행 과정, 즉 중중의 의견을 구한다거나 각지로는봉전서의 간행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은봉전서』를 간행하면서 기록한 序跋文과 관련 고문서를 통해 그 과정을 대략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은봉전서』를 간행하기 이전의 안방준의 문집 간행은 안방준의 5대손인 안창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안창현은 1773년(영조 49)에 안방준의 저술 가운데 일부를 모아서 金鍾厚와 李基敬을 찾아가 그릇된 곳을 고증하고 편차를 바로 잡아 10권으로 나누어 『우산선생집』으로 간행하였다.⁸⁾



저자: 安邦俊 著
표제: 牛山先生集
발행사항: 『刊行地未詳』: 安昌賢, 1773년
관중: 목활자본
형태사항: 10권5책, 29.3×19.0cm, 四周雙邊 半郭
20.9 x 14.7cm, 有界, 10行20字,
內向3葉花紋魚尾
내용: 卷1-詩, 卷2-疏, 卷3-書,
卷4-墓文·行狀·遺事, 卷5~8-記事,
卷9-祭文·序·記·題跋·銘·箴, 卷10-雜著

<그림 1> 『우산선생집』 (미국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 소장본)

8) 『隱峰全書』卷18 『隱峰全書跋』.

“不肖孫 惟恐父祖之志 是墜又受家兄之名 乃就正於諮議金公鍾厚 參議李公基敬 考其訛誤 正其編次 分爲十卷 謀入剗剗 則幸我先生子孫及嘗景慕先生之縉紳 章甫助而濟之以至於成可謂幸矣 … 不肖孫昌賢謹識.”

다만 재력이 넉넉하지 못해 대량으로 인쇄하여 배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안방준의 주요한 저술인 『항의신편』·『호남의록』·『혼정편록』·『기묘록』 등의 글은 이미 별도로 인쇄하여 배포하기도 했으며 책이 거질이어서 인쇄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록하지 않았다.⁹⁾

이후 전질로 『은봉전서』가 간행되는데 주요 역할을 한 인물은 안방준의 6대손인 안수록이다. 안수록은 기존에 간행된 『우산선생집』을 비롯하여 안방준의 다른 저술까지 한데 모아 편차하고 수정한 작업을 거치면서 후대에 간행할 수 있게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전에 간행된 바 있는 연보와 부록에 대해서도 교정이 정밀하지 못하고 소략한 곳이 많다고 생각하여 아들 안명윤(安命允)과 함께 수정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아들 명윤이 사망하여 한동안 작업이 지연되다가 1836년(헌종 2)에 편차를 마쳤다.¹⁰⁾ 또한 안창현이 간행한 『우산선생집』을 비롯하여 이 책에 편차하지 못한 저술을 모아서 하나로 통일시키고 이를 모아 말끔히 등사하여 여러 해 동안 교정하였다. 즉 중첩된 것은 깎아 내고 『기묘유적』·『혼정편록』·『항의신편』 같은 책과 원집을 한데 모아서 이를 『隱峯全書』라고 이름하고 나중에 판각하기를 도모하였다.¹¹⁾

안수록이 『은봉전서』를 간행하는 데 기반을 닦아 놓았다면 이때에 편차한 『은봉전서』의 간행과 배포를 직접적으로 주도한 인물은 안방준의 9대 종손인 안영환이다. 안영환은 보성에 세거하던 자신의 종가를 일으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이며¹²⁾ 『은봉전서』 간행 작업 역시 자신의 종가를 재건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9) 『隱峰全書』卷18 「隱峰全書跋」.

“財力未贏 未能多印 而廣布是爲餘恨 … 其中抗義編湖南義錄混定編己卯錄登書 或已別印而行于世 或以多舛 而未能並錄 俱不載此冊之中 … 不肖孫昌賢謹識.”

10) 『隱峰全書』卷20 「隱峰全書跋」.

“隱峰先生府君 年譜與附錄 舊有刊行者 而校讎未精 且多疏略 故壽祿 竊以是爲病 不揆僭妄 與亡子命允 下手參訂 未及卒業 而命允遽已沒矣 因循數歲 今纔成編 … 不肖六代孫壽祿謹識.”

11) 『隱峰全書』卷20 「隱峰全書後跋」.

“族從祖參奉公 憂其未能壽傳 諸書一統 哀梓繕寫 積年校讎 廣其攬取 刪其重疊 若己卯錄混定錄抗義編原集附錄 輯成一帙 名之曰隱峰全書 以圖其後日之剗刪 … 崇禎紀元後四甲子季秋八代孫 相謹識.”

착수하였다. 사실 『은봉전서』의 간행은 안영환의 父인 安權(1773~1853)이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의 사정으로 인해 간행할 겨를이 없어 진행하지 못한 채 유서와 유언을 남겨 종가의 큰 한이 된지가 오래되었다고 한 것을 볼 때¹³⁾ 은봉종가에서는 적어도 안권 때부터 『은봉전서』의 간행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문집을 간행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봉종가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안권이 작성한 『宗家蕩敗事蹟』이라는 기록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종가탕패사적』은 안방준의 8대종손 안권이 1824년(순조 24)에 작성한 것으로 종가가 가산을 탕진하여 쇠락하게 된 이유를 적어 놓은 문서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윗대의 종손들이 숙종시대 안방준의 관작삭탈과 서원훼철을 복구하고 대계서원을 사액서원으로 되게 하는 과정 및 갈학등으로 안방준의 묘소를 이장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당시 안권은 모령에서 결방살이를 하며 빈곤한 생활을 했다.¹⁴⁾

비록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은봉전서』의 간행이 미루어지긴 했지만 안영환을 비롯한 종중의 사람들이 이를 간행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친족들과 상의하여 각 집안에서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거두어서 판각을 시작하려고 하였다.¹⁵⁾

12) 안영환은 문집의 간행뿐만 아니라 문중 내부의 다른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죽산안씨 가문은 안방준이 시호를 받은 뒤 국가로부터 不祧廟의 명을 받기 위해 尊慕契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후손들이 契畵를 무단으로 팔아넘기자 적극적으로 청원하였음을 은봉종가에 소장된 고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의 고문서는 한국학자료센터([Http://www.kostma.net](http://www.kostm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소장처: 보성 택춘 죽산안씨 은봉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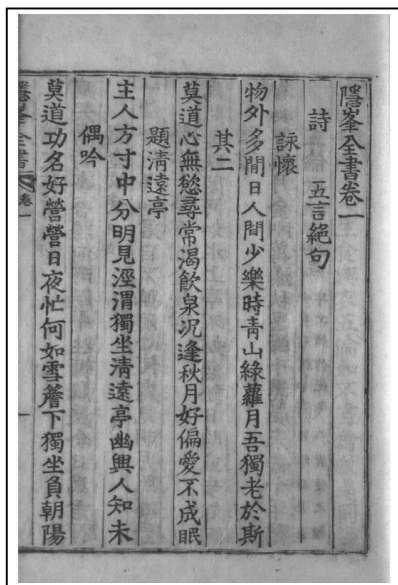
13) 『1867년 2월 안영환 단자』(<표 1>의 10번 문서).

“… 民之九代祖隱峯公 早遊坡門 有所記實者 莫非崇道德・扶綱常・辨邪正・明是非・獎節義之文 則刊布未遑 先父老之一生經紀而未遂 或有遺書 或有遺言 蓋宗之爲恨者久矣…”

14) 『宗家蕩敗事蹟』, 『선비 안방준, 도를 묻고 의를 행하다』(조선대학교박물관, 2010), 72.

15) 『隱峯全書』卷20 『隱峰全書後跋』.

“嗚呼 以今視昔 上下二百餘年 而世代寢遠 懼其因循未遑 迺於癸亥冬 宗孫永煥 將謀鉅梓 詢議於宗中 諸族視各家之豐約 出力之有差.”

	저자: 安邦俊 著 표제: 隱峯全書 발행사항: 寶城: 大溪書院, 1864 판종: 목활자본 형태사항: 40卷20冊, 32.0x21.0cm, 四周雙邊 半郭 23.0x 16.0cm, 10行20字, 有界, 註雙行, 上1葉花紋魚尾 내용: 卷1-詩, 卷2-疏, 卷3-書, 卷4-墓文·行狀·遺事, 卷5~8-記事, 卷9-祭文·序·記·題跋·銘·箴, 卷10-雜著, 卷11~15-己卯遺蹟, 卷16-己卯遺蹟附錄, 卷17~34-混定編錄, 卷35~38-抗義新編·隱峯全書跋·隱峯全 書實記 附錄 上-賜祭文·年譜, 附錄 下- 遺事行狀·墓誌·墓表·謚狀·祭文·上樑 文·疏·序·跋·傳·跋·書隱峯全書後跋
---	---

<그림 2> 『은봉전서』(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은봉전서의 간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안방준의 후손들이었지만 간행 작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인물은 1862년(철종 13)에 보성군수로 부임한 유건환이다. 그는 보성에 부임한 이후 안방준의 유집을 열람하면서 간행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종종으로 글을 보내어 通諭하였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동헌으로 날을 정하여 모두 모이자 유건환이 예를 두텁게 하고 대우하면서 녹봉을 덜어 도와주면서 간행하고 배포하기를 권면하였다.¹⁶⁾

유건환이 이렇게 자신의 녹봉을 덜어가면서 은봉전서의 간행을 적극적으로 권 면했던 까닭은 유건환의 선조와 안방준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유건환은 자신의 선조 인 兪省曾(1576~1649)·兪伯曾(1587~1646)·兪槐(1599~1655)·兪槩(1607~1664)·兪徹(1606~1671) 등과 관련된 글이 『은봉전서』에 수록되어 있음을 보

16) 「1867년 2월 안영환 단자」(<표 1>의 10번 문서).

“… 幸值兪侯之莅茲本郡 覽其遺集 惜其未刊於民之宗中 某某處發簡通諭 定日都會于東軒 待之優禮 捐俸助力 勸以刊布 故自宗中隨力聚財 乃設廳于大溪書院矣 ….”

고 선조들이 안방준과 교분을 맺었던 사이였음을 알게 되었다.¹⁷⁾ 또한 안영환은 유건환의 선조들이 안방준에게 보낸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다.¹⁸⁾ 이러한 이유로 유건환은 『은봉전서』 간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건환의 도움을 받은 은봉증가는 1863년(철종 14)에 大溪書院¹⁹⁾에 文集廳을 설치하면서 刊役을 시작할 수 있었다.

3. 간행 과정상의 분쟁

3.1 비용에 관한 분쟁

문집의 간행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였다. 서원에서 문집을 간행할 경우 서원 자금을 융통하거나 서원 관련 문중 및 저자와 문인 관계의 인물들에게 비용을 추렴하기도 하였다. 문중에서 문집의 간행비용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 주체가 되는 개인이 비용을 마련하거나 문중에 속한 각 후손들에게 간행비용을 배정하였다.²⁰⁾

『은봉전서』의 간행작업은 은봉 증가의 주도와 유건환의 도움에 힘입어 시작할 수 있었다. 다만 은봉 증가에서는 경제력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간행 사업을

17) 『隱峯全書』卷20『隱峰全書後跋』我先祖愚谷·杞平·市南·鳳洲·醉翁 諸先生 俱以並世雅契往復文字多載於是編 則如何敢辭焉.; 『隱峯全書』卷4 墓文 杞平君俞公神道碑銘并序, 『隱峯全書』에 안방준이 지은 杞平君 俞伯曾의 神道碑銘이 수록되어 있다.

18) 유건환의 선조인 俞槩, 俞省曾, 俞伯曾이 안방준에게 보낸 편지가 현재 은봉증가에 소장되어 있다.

19) 大溪書院: 1657년(효종 8) 지방유림의 공의로 안방준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중앙의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훼손과 복설이 거듭되었다. 1691년(숙종 17)에 안방준사우에 대한 훼손이 결정되어 이듬해 훼손되었고, 그 뒤 1695년(숙종 21)에 복설되었다. 1704년(숙종 30) ‘大溪(대계)’라고 사액되어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780년(정조 4) 화재로 전소된 것을 1784년에 중건하였다. 그 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손계영, “『성재선생문집간소용하기』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고문서연구』 45(2015), 185.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성 죽산안씨 문중의 각 과에 家力에 따라 ‘名錢’과 ‘別扶錢’의 명목으로 거두고자 하였다.

명전은 이름 그대로 과에 일정하게 배분된 비용이며 별부전은 별도로 부조하는 비용으로 재력이 많은 가문에 배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자료가 없어 이러한 명목으로 돈을 거두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가 있었는지는 살펴보기 어렵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집의 간행을 위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후손들에게 비용을 배정했더라도 간행비용을 거두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모두 간행비용을 둘러싼 분쟁으로써 동일지역인 보성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후손들에게 간행비용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은봉전서』의 간행소인 대계서원에서는 후손들로부터 비용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간행비용에 대해 관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²¹⁾ 우선 동일한 지역에서 간행비용을 수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살펴보자.

大溪文集所稟目

右稟 伏以民等 各派排錢 或有過半捧之者 或有沒數捧之者 而猶獨頑拒未捧者 鳳德面居安命琬安亮煥乎 安命琬則稱以綾州派 而以分所之意 頑拒不納者也 安亮煥則渠之派名錢與別膊合爲三百兩 而只捧二十兩是遺 餘錢二百八十兩 收納無期 爲其後孫者 皆如兩民則 莫重大事何時了役乎 民等私力收捧未由 故茲以後錄稟告 特爲處分 安命琬安亮煥 發牌捉致 以爲準事之地是白齊

甲子二月二十七日 安吉煥 安大鉉 安致煥 安永煥 安 格 等

安命琬錢一百十兩

安亮煥錢二百八十兩

官[署押]

爲先之事 固當同心同力 以事竣事是去乙 各自立貳 致此紛拏 誠極可慨鬱 一向督捧事兩人從率待事

廿七日

鳳德主人[印]

위의 문서는 1864년(고종 1) 2월 27일에 대계서원에서 보성군수에게 청원한

21) 다만 이러한 분쟁은 대계서원에서 관에 올린 자료만 남아있으므로 양측의 의견을 모두 알 수 없다. 그리고 아래의 사례들은 하나의 분쟁이 오랜 시간동안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분쟁의 사례에 속한다.

稟目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계서원에서는 『은봉전서』를 간행하기 위해 죽산안씨 각 파에 문집 간행비용을 배당하여 거두어 들였다. 이 가운데 반 넘게 받은 경우도 있으며 혹은 다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봉덕면에 거주하는 안명완과 안양환은 납부하기를 거부하여 받지 못했다. 안명완은 자신이 능주파라고 칭하면서 分所할 뜻으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안양환의 경우는 명전과 별부전을 합하여 300냥을 내야 했는데 20냥만 받았으며 남은 280냥에 대해서는 받을 기약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력으로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명완에게 받을 110냥과 안양환에게 받을 280냥을 받아서 간행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수령은 이에 대하여 “선조를 위하는 일은 同心同力하여 일을 마쳐야 하는데 일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데에 이르렀으니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하면서 독촉하여 받기 위해 두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처분을 봉덕면주인에게 내림으로써 대계서원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안명완의 경우는 4월이 지나가도록 돈을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번에는 독촉하여 거두기 위해 發牌한다는 처분을 내려서 봉덕면주인이 아닌 형리가 행하도록 전보다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려주어²²⁾ 역시 대계서원의 청원을 들어주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문서를 하나 더 살펴보자. 아래 문서는 1864년(고종 1) 9월에 대계서원문집소에서 보성에 거주하는 후손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 보성군수²³⁾에게 올린 품목이다.

大溪書院文集所稟目

右稟 伏以民等先祖文康公隱峯先生文集劖劂 曠世未遑矣 自昨年冬 創始刊役 而所入之財 隨其子孫之家力 名錢與別扶 畧畧分排矣 洽滿一年 幾至了

22) 『1864년 4월 대계서원 품목』.

“大溪院文集所稟目 右稟 伏以民等 各派排錢 次第收捧 而惟獨鳳德面梁山村安命琬派錢一百兩 尙不備納 爲先之道豈容若是 茲以仰稟 同安命琬 右錢百兩持是遣 卽刻提待之意 發牌是白齊 甲子四月二十五日化民 安吉煥 安大鉉 安 檀 安 相 安永煥 安琪煥督捧次發牌事 廿六日 刑吏.”

23) 이 당시 수령은 李奎書로 1864년(고종 1) 6월에 부임하여 1865년 4월에 체임되었다. 『승정원일기』 1864년(고종 1) 6월 20일 기사, 1865년(고종 2) 4월 13일 기사.

役 或有沒數捧用者 或有未盡收捧者 故未盡處 催促非一非再 終始愆納 其在爲先之道 豈有如許道理乎 民等稟報 雖爲愧赧 先集之役準事乃已 而且私力捧用無路 故茲以後錄仰稟 自法庭一一發牌捉致 卽爲捧給 以完大事之地 是白齊

甲子九月 日 安大鉉 安 檀 安 杓 安 相 安致煥

後

玉巖 安圭夏 錢四兩 安達煥 九兩, 文田面玉釵 安直煥 四兩, 道村虎洞 安日煥 四兩, 鳳德面珍山 安啓煥 九兩, 白也面白也村 安命錫 五兩二錢, 栗於面水川 安樺 二兩

官[署押]

官庭收給 倘不有恥於爲先事乎 官意則只如是事 廿一日[印]

내용을 살펴보면 1863년(철종 14) 겨울부터 간역을 시작하였는데 간행비용은 사손의 가력에 따라 명진과 별부전을 분배하였다. 그 가운데 다 거둬들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으므로 돈을 납부하라고 재촉하기를 여러 번 했으나 기한이 다 되도록 납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력으로는 받을 길이 없으므로 거주지 및 성명과 받아야 할 돈을 후록하니 법정에서 일일이 발패하여 잡아들인 후 다 거두지 못한 간행비용을 받아서 간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후록을 살펴보면 보성 옥암면에 거주하는 안규하 4냥·안달환 9냥·문전면 옥채에 거주하는 안직환 4냥·도촌면 호동에 거주하는 안일환 4냥·봉덕면 진산에 거주하는 안계환 9냥·백야면 백야촌에 거주하는 안명석 5냥2전·율어면 영천에 거주하는 안화 2냥으로 모두 37냥 2전을 수령을 통해 받아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수령은 “관정에서 수합하는 것은 위선하는 일에 수치스러움 있지 않은가? 관의 뜻은 다만 이와 같다.” 라고 하여 대계서원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문중 사람에게 돈을 거두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잘 협조하여 간행비용을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배분받은 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간행의 주체가 되는 문중에서는 한 지역 내에서 초차 문중의 합의에 따르지 않아서 비용을 거두기 어려우면 우선 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거두고자 하였다.

또한 거주지를 달리하는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간행비용을 거두

어서 문중에서 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다음 문서의 내용은 보성이 아닌 순천과 능주에 있는 문중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기 위해 탄원서를 올린 사례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후손들이 보성관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행비용을 거두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大溪文集所稟目

右稟 伏以隱峯先祖文集劄劄 曠百世未遑之事 式克于今日者 幸賴城主之顧念 事役至於半工 其子孫之感祝 爲如何哉 事巨力綿在於財力之愆納 而居在本邑子孫間 多有愆納之患 況於居他邑之子孫乎 民等族人安圭滿四五家 居在順天府三日浦堂山亭 而所排錢爲二百兩 設廳三四朔無分錢 拮据之道爲其子孫者 重先事之道 若是慢忽乎 自寶至順相拒爲數百里地遠 便稀私力收捧無路故茲以仰 稟自摺紳 官家移文於順天府 嚴囚督捧 以完大事之地是白齊

甲子三月 日 安吉煥 安大鉉 安永煥 安 相 安琪煥 等

官[署押]

移文成送事

十一日

刑吏[印]

위의 문서는 1864년(고종 1) 3월에 역시 대계서원에서 보성군수에게 올린 품목이다. 오랜 기간 동안 안방준의 문집을 간행을 하지 못하다가 지금에 이르렀는데 다행이 성주(유건환)의 도움으로 인해 간역사업이 반 정도 진행되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본읍의 자손 중에서도 간행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근심이 많은데 타읍에 거주하는 자손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안규만 등 4~5家は 순천부 삼일포 당산정이라는 곳에 거주하는데 배당한 돈 200냥을 간행청이 설치된 지 3~4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나누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한 그들은, 배전 200냥을 받으려고 해도 보성에서 순천까지의 거리가 수 백리나 되어 멀 뿐만 아니라 또 인편이 드물기 때문에 사력으로 받을 길이 없으므로 순천부로 이문하여 엄히 가두고 간행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수령은 이문을 작성하여 보내겠다는 처분을 내리면서 대계서원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大溪院文集所稟目

右稟 伏以綾州富春面牆內村居安{ㄱ+穎} 卽民之宗中 饒居者也 以先集劄副事 別扶錢二百五十兩 排錄於渠之下 而專人委書 非止一再 自春徂夏 一不來見是遣 所排錢無一分備納 爲先之道豈容若是 凡他世誼家 猶有相助之義 況其後裔乎 此不過憑籍他官 有此頑拒 茲以仰稟 移文發校捉囚督捧是白齊
甲子六月 日 安吉煥 安大鉉 安 相 安 檀 安琪煥

官[署押]

移文成送事初八日

刑吏[印]

위의 문서는 1864년(고종 1) 6월에 대계서원에서 작성한 품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능주 부춘면 장내촌에 거주하는 안령이라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있는 자였다. 그래서 대계서원에서는 『은봉전서』를 간행하는 일로 별부전 250냥을 그의 이름으로 배록하였다. 하지만 전인에게 편지를 맡겨 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봄부터 여름까지 한 번도 와서 보지 않고 배전은 1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계서원 측은 다른 세의가 있는 집이라도 오히려 서로 돕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후손이 되어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 이는 능주에 사는 것을 빙자하여 이렇게 완악하게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능주로 이문을 발송해줄 것을 보성군수에게 청원하였다. 이에 보성군수는 능주로 이문하겠다고 처분을 내려 형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

한편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력이 조달되어야 했다. 그 가운데 종이의 경우 상당한 양을 필요로 하였다. 은봉전서는 40권 20책의 거질로 편찬되었고 약 140질을 인쇄하여 배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종이가 필요했다.²⁴⁾

24)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종이를 구매한 양과 비용에 대해서는 『성재집』을 사례로 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성재집』은 총 17책으로 구성되었는데 간행 당시 구입한 종이의 양은 98,780장이고 이 양은 종이의 크기에 따라 75질 내지 150질을 인쇄할 수 있는 분량이며 그 비용 또한 1,500냥 정도로 출판 비용의 20%에 해당된다고 하였다(손계영(2015), 194). 이러한 예로 볼 때 『은봉전서』는 40권 20책의 거질로 제1책 72장, 제2책 63장, 제3책 59장, 제4책 61장, 제5책 58장, 제6책 108장, 제7책 66장, 제8책 77장, 제9책 114장, 제10책 62장, 제11책 93장, 제12책 78장, 제13책 84장, 제14책 112장, 제15책 72장, 제16책 115장, 제17책 73장, 제18책 52장 제19책 74장, 제20책 83장으로 전체 1,616장으로 확인된다. 총 140질을 인쇄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종이를 필요로 했을 것이고 그 비용 또한 아주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大溪文集所稟目

右稟伏以文集剗剗幾至了役 而紙物將乏 賃用時急 各派零錢 過限不入 故玆以後錄 仰稟 嚴囚督捧急速賃紙以爲訖功之地是白齊

甲子五月十七日 安大鉉 安永煥 安 相

後

安命學錢四十兩 蘆洞面新興洞

安命錫錢二十二兩 白也面白也谷

安東鉉錢四兩 兼於面新基村

官[署押]

發牌督捧事

十八日

刑吏[印]

위의 문서는 1864년(고종 1) 5월에 안대현 안영환 안상 등이 보성군수에게 올린 품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간역사업이 거의 끝나가지만 지물이 장차 부족하여 구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대계서원에서는 각파에서 기한을 넘겨 다 받지 못한 비용을 거두어서 종이를 마련하고자 하여 안명학에게 40냥, 안명석에게 22냥, 안동현에게 4냥을 받을 수 있도록 엄히 가두고 독촉하여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수령은 패를 발하여 독촉하고 받아내라고 처분을 형리에게 내려주었다.

이상으로 간행비용에 따른 분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보성 죽산안씨 은봉종가는 『은봉전서』를 간행하기 위해 유건환의 도움을 받아서 대계서원에 문집청을 설치하고 간역을 시작하였다. 문집을 간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방준의 후손인 각 파에게 명전이라는 명목의 비용을,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 별부전이라는 명목의 비용을 분배하여 거둬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간행비용을 보성지역 뿐만 아니라 화순, 순천에 거주하는 각 후손들부터 거두는 일이 쉽지 않았다. 각 후손들이 간행비용을 미납한 이유는 자신의 파가 다르기 때문에 分所할 것이라는 이유,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 등이었다. 대계서원에서는 미납한 집에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는 등 배정한 간행비용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사력으로는 도저히 받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관의 협조를 구하면서 간행비용을 받아내고자 하였다.

한편 이 분쟁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문집 간행시의 지방관의 역할이다. 이는 청원에 대한 수령의 처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2> 대계서원문집소에서 올린 청원 내용과 수령의 처분

번호	문서명	작성일	내용	수령의 처분
1	稟目	1864년 1월	보성에 거주하는 안명환·안양환에게 분배한 간행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독봉하기 위해 데리고 올 것
2	稟目	1864년 3월	순천에 거주하는 후손에게 간행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문 발송 요청	이문 발송함
3	稟目	1864년 4월	보성에 거주하는 안명환에게 간행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독봉하기 위해 발패함
4	稟目	1864년 5월	종이를 마련하기 위해 영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독봉하기 위해 발패함
5	稟目	1864년 6월	능주에 거주하는 후손에게 간행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문 발송 요청	이문 발송함
6	稟目	1864년 9월	보성에 거주하는 후손 7인에게 분배한 간행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문중에서 알아서 할 것

위의 분쟁 사례에서 1864년(고종 1) 9월에 올린 청원서에 대해 수령은 “관정에서 수급하는 것은 위선사업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관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므로 문중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처분을 내려 대계서원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반대로 9월에 올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3·4·5·6월의 경우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계서원 측에 유리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지방관이 문집의 간행 문제에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1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한 분쟁 당시 보성군수를 지내고 있던 사람이 『은봉전서』 간행을 도와준 유건환이었기 때문이다. 유건환은 1862년 윤8월에 보성군수에 제수되어 1864년(고종 1) 6월까지 역임하였다. 이 기간에 『은봉전서』의 간행을 주도한 자들이 간행비용을 수렴하는 문제로 유건환에게 청원서를 올릴 때마다 은봉종가의 문집 간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문집 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리한 처분을 내려주었던 것이다.

유건환의 처분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문중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해당자가 관에 청원서를 올리면 관에서는 이들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9월에 올린 청원의 처분과 같이 문중에서 처리를 하라는 식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자세한 사정도 알지 못하는 문중의 일에 개입을 할 경우 분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⁵⁾

하지만 유건환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집의 간행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유건환의 이러한 행동은 문중의 문집 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수령의 권한이 사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유건환은 자신의 선조와 교유하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부임 지역에 해당하는 인물을 선정하여 녹봉을 털어주면서 간행을 도와주었다. 또한 비용을 거두지 못해 여러 차례 청원을 할 때마다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하여 간행 비용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방관의 문집 간행에 있어서 대상 인물의 선정은 자신의 부임한 지역의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직계, 외가, 처가 등 혈연·혼맥, 그리고 학맥 등을 통한 사제관계가 중심이 되어 문집 간행이 결정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혀져 있다.²⁶⁾ 그러므로 유건환의 문집 간행 활동은 조선후기 지방관의 문집 간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형태의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2 分所와 分帙에 따른 분쟁

『은봉전서』를 간행할 때에는 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지만 刊印과정 중에도 문중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의 요점은 1863년(철종 14)에 『은봉전서』를 간행할 때 간행장소가 두 곳으로 분소되었고 이로 인해 합질하지 못하여 배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종가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25)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 본 족보 편간 과정상의 분쟁,” 『한국학논집』 44(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253.

26)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 문집 간행,” 『영남학』 15(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223.

우선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문서는 安檀·安樞·安相 外 12명이 연명하여 1867년(고종 4) 2월에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이다.²⁷⁾

寶城郡儒生安檀安樞安相等謹齊沐上書于

繡衣閣下 伏以生等先祖隱峯公諱邦俊 以坡門 諸弟記實頗多 刊布未遑爲累世
 壺宗之恨矣 去癸亥良 幸值俞侯莅 茲本郡覽其遺集 惜其未刊 捐俸助勸 始刊
 于公之書院大溪矣 牛峯一派 卽隱峯公第五子之支派 偏享吳中百年之慶 饒富
 藝興 厭不得自擅 至設板之日 誘引鑄工 偷一鑄板 乘夜逃走 別爲設板于牛峯
 村舍 俞侯方在縉紳之任 痛其沮戲 嚴治次捉囚 則渠矣言內 分所刊印 雖非事
 體 出於省費取便 非有他意 則分所刊印而合爲粧黃 則別無所損之意 累累懇
 請于宗中 故雖有後日之欺 其在骨肉 忍見目下之刑禍 故累度稟告 以免禍色
 而待其粧黃之日矣 俞侯則未幾還朝 而及其粧黃 頓背前約 則先父老幾百年未
 遑之事 幸圖於今日 而一秩難成者 文集二十卷內 原集五卷·『己卯錄』二卷·
 抗義編二卷·混定編九卷·附錄二卷 分所之日 卷秩相錯 而原集四卷·抗義
 編二卷·混定編三卷 合九卷牛峯印出 其餘十一卷 大溪印出者 莫非牛峯之劃
 計者 而秩數則百四十秩內 前城主李等時累告 而僅合本道所傳七十八秩 而畿
 湖所傳六十二秩 則稱托非常 終不合秩 則這間忘情背理之端 今不敢枚舉 而
 其在一門 欲效張氏之規 而含糊韜舌 則分冊無期 前日偷板分所之舉 乃是今
 日不合不布 而欺宗之秘計 則若非公庭明決之嚴勅 合秩分布 更無其日 故所
 合冊子後錄 敢達于按廉之下 特爲處分于牛峯安檀處 卽地合秩于大溪書院 從
 速傳致于畿湖 世誼之家 千萬幸甚 伏惟藻鑑

丁卯二月 日

安 檀 安大鉉 安 杭 安志煥 安永煥 安文煥 安斗煥 安圭白 安圭三 安圭玄
 安圭元 安圭憲 安圭鼎 安圭駟 等

後

未合冊六十二秩

合而不傳冊二十秩

暗行御史[署押]

(題辭) 使其門中爛商從便善處向事

本官初十日[印]

『은봉전서』는 오래전부터 간행되고 있지 못하다가 보성군수로 부임한 유건환
 의 도움으로 인해 1863년(철종 14)에 비로소 대계서원에 문집소를 설치하고 간행
 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때에 뜻하지 않게 안방준의 다섯째 아들 逸之(1613~
 1643)의 파인 우봉파의 한 支派의 일원이 간행을 자기를 멋대로 할 수 없음을

27) 「1867년 2월 寶城郡儒生 安檀 安樞 安相 상서」(<표 1>의 8번 문서)

싫어하여 설판하는 날에 鑄工을 유인하고 鑄板을 훔쳐 야밤에 도주하고 따로 牛峯村舍에 設板하였다.

종가 측의 청원을 통해 우봉과의 지파가 문집의 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건환은 1863년에 이들을 엄히 다스리기 위해 잡아가두었다. 우봉과 지파의 일원은 비용을 아끼고 편의를 취하자는 뜻에서 간행장소를 나누어 간인하려는 것이므로 이후에 합해서 장황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별다른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화를 면하도록 종중에 여러 번 간청하였다. 그 말을 믿은 安樞·安樞·安相 등은 비록 속임을 당하더라도 골육지간으로 눈앞의 화를 볼까봐 여러 차례 稟告하면서 화를 면하게 해주고 장황하는 날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하지만 유건환이 조정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황하는 날이 되자 이들은 전에 한 약속을 어기고 장황을 하지 않았다.

분소하여 간인한 상황을 보면 『은봉전서』는 모두 20책으로 原集 5책·『己卯錄』 2책·『抗義編』 2책·『混定編』 9책·『附錄』 2책이다. 그 가운데 우봉사촌에서는 原集 4책·『抗義編』 2책·『混定編』 3책인 총 9책을, 그리고 나머지 11책은 대계서원에서 간행하였다.²⁸⁾ 각각의 저술들이 흩어진 채로 산질되어 간인되었기 때문에 합질을 이루지 못했다. 대계서원에서 『은봉전서』를 간인하려고 했던 질수는 총 140질이었는데 그 중 전라도에 전해 줄 78질은 전에 부임한 李 수령에게 여러 차례 고하여 합질하였으나²⁹⁾ 기호지방에 전해 줄 62질은 합질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安樞·安樞·安相 등은 우봉과가 전에 판을 훔치고 분소한 행동으로 합질과 배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종중을 속이려는 계책이기 때문에 판을 훔친 우봉과의 안령에게 처분을 내려 대계서원에서 합질하여 기호지방의 세의가 있는 가문에 보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수령은 이에 대해 문중에서 토론하여 편의를 따라 처리하라는 처분을 내려 문중 내에서 상의하도록 하였다.

28) 원문에서는 20卷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은봉전서는 40권 20책으로 간행되었으므로 20冊이라고 해야 옳다. 그러므로 서술할 때 卷으로 기재된 것을 冊으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29) 이와 관련된 문서는 전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78질만 따로 합질하게 되었는지의 정황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봉과가 주판을 훔치고 20권 중 9권을 분소하여 간인하려고 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종중을 속이려는 계책이라고 하였는데 이 계책은 과연 무엇이이었을까?

單子 化民安永煥

…幸圖於俞侯之時 則其在後孫 宜有來暮之頌 而獨牛峯之若是携乖者 有所以然 大抵洛中士夫 錯認安樞爲隱峯之宗孫 亦非一朝之事 則同安樞 染脂羊鼎於嫡承之宗 掩匿爲主 而恐其冒宗之跡 綻露於序跋文字也 盖山丈之序 俞侯之跋 有先生之宗孫永煥云者 則安樞之一心潛計 都在於刪去此文字 然後合秩分布乃已 則掩宗一款 姑舍 伏念先集之訖功 實賴於俞侯 則刪此跋文 而反歸於無功者 是果人情所忍爲者乎 依刊而合秩分布者 民之所以呈卞也 懷私而延忤不合者 安樞之所以乖激也 曰是曰非 不出乎兩端 伏願城主特下洞燭 更爲嚴勅于安樞 所合冊八十二秩內 只運三十一秩 則餘在五十一秩 趁則運合于大溪書院 轉報于繡衣道之地 千萬幸甚 伏惟藻鑑

丁卯二月 日

行官[署押]

(題辭)以此論報 姑待處分事 二十七日

刑吏[印]

위의 문서는³⁰⁾ 안영환이 1867년(고종 4) 2월에 수령에게 올린 단자이다. 그는 이 단자에서 우봉과(安樞)가 주판을 훔치고 鑄工을 유인한 후 우봉촌사에 설판하여 9책을 간인한 이유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고 하면서 서울 사대부들이 안방준의 종손을 안령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며 이렇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안령의 조부가 일찍이 음직으로 여러 해 동안 서울에 거주하였는데 이때 서울의 사대부들이 안령을 은봉의 종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¹⁾ 그래서 안령이 오랜 기간 동안 안방준의 종손으로 행세한 것이 은봉전서의 서문과 발문으로 인해 탄로 날 것 같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안령이 종손을 칭하면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관

30) 「1867년 2월 化民安永煥 單子」(<표 1>의 10번 문서).

31) 「1867년 2월 寶城郡儒生 安樞 安樞 安相 上書」(<표 1>의 11번 문서).

“…大抵安樞祖 曾之爲蔭職也 多年遊京 洛中士夫誤知安樞爲隱峯之宗孫者 ….”

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

안영환이 말한 서발문의 내용은 송래회의 서문과 유건환의 발문에 있는 ‘先生之宗孫永煥’ 및 ‘有先生之宗孫永煥與其族某某合議劄削之文’이라는 글귀이다.³²⁾ 안령은 이 글자 그대로 『은봉전서』가 간행되어 전국 각지에 배포하게 된다면 자신이 종손이 아닌 것이 탄로 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을 안영환에게 보내 합질하고 싶으면 이 문구를 제거하라고 하였으며, 송래회의 서문에 대해서는 그 글자를 안령의 조부인 참봉공으로 고칠 것을 제안하였다.³³⁾

유건환은 안령의 제안처럼 유건환의 작성한 발문을 삭제하게 된다면 『은봉전서』의 간행을 도운 유건환의 공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발문의 내용 가운데 종손의 이름을 비롯하여 간행을 도운 죽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그 사실을 서술한 것이 지 편향되고 사사로운 문자는 아닌데 안령은 꺼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끝내 선세 유적의 간행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 비난하였다.³⁴⁾

또한 안령이 송래회의 서문에서 영환을 참봉공으로 사사로이 고치라고 집언하는 것은 적통을 이은 종가를 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⁵⁾ 앞선 합질되지 않은 62질 가운데 10질은 어떻게 해서 합질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안령에게 다시 엄한 신칙을 내려 합해야 하는 82질 가운데 31질은 운반하여 합했으니 나머지 51질에 대해서 대계서원으로 운반하여 합할 수 있도록 암행어사에게 전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잠시 기다리라는 처분을 내렸다.

32) 「1867년 2월 寶城郡儒生 安樞 安樞 安相 上書」(<표 1>의 11번 문서).

안영환이 다시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에서는 “… 俞侯跋文中 有先生之宗孫永煥與 其族某某合議劄削之文者 蓋敍其事實 ….”라고 하였다.

33) 「1867년 2월 寶城郡儒生 安樞 安樞 安相 上書」(<표 1>의 11번 문서).

“… 又於桐谷序文中 有先生後孫永煥處 而安樞遣子 改之以參奉公 族曾孫永煥 參奉公即安樞之祖父也 ….”

34) 「1867년 2월 寶城郡儒生 安樞 安樞 安相 上書」(<표 1>의 11번 문서).

“… 俞侯跋文中 有先生之宗孫永煥與其族某某合議劄削之文者 蓋敍其事實 非有偏私之文 則爲安樞之切心忌惡 而終遏先世遺蹟者 是豈道理 ….”

35) 「1867년 2월 寶城郡儒生 安樞 安樞 安相 上書」(<표 1>의 11번 문서).

“又於桐谷序文中 有先生後孫永煥處 … 渠稱以私改此文文字爲執言者 都欲掩匿嫡承之宗.”



<그림 3> 송래희의 서문과 유건환의 발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이를 종합해 보면 『은봉전서』는 우봉과의 안령이 주관을 훔치고 달아났으며 9권은 우봉촌사에서 11권은 대계서원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합질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봉과의 지파인 안령의 조부가 서울에 있었던 것을 계기로 많은 사대부들이 종손을 안령으로 알게 되었고 이는 안령이 종손 행세를 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은봉전서』의 서문과 발문에는 안방준의 종손이 안영환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손으로 행세를 한 것이 탄로가 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안령은 유건환의 跋文을 삭제하고 송래희의 서문은 영환을 參奉公으로 고쳐야 합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안영환을 비롯한 대계서원측은 안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여러 차례 암행어사와 군수에게 합질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위의 분쟁과 관련하여 합질을 이루어 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상서 이외의 다른 날에 올린 상서에 기재된 암행어의 처분에는 안령이 종손을 속이고 분란을 일으켜 합질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명망있는 선조의 폐악한 후손이며 문중의 죄인이라 할 수 있으며 문중의 논의가 일제히 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뉘우치지 않으니 곧장 잡아와 의리로 깨우치게 하여 대계서원에서 합질하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³⁶⁾ 이러한 처분으로 보아 대계서원에서 합질한 이후에 배포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이 분쟁은 문집의 간행과 배포를 둘러싸고 발생한 종중과 지파간의 분쟁이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안방준의 종손으로 행세하면서 서울에서 생활하였으나 문집이 간행되어 각 지역으로 배포된다면 자신이 종손이 아닌 것이 탄로가 날 지경에 이르게 되자 결국 주판을 훔치고 분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안영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계서원에서 합질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청원 하였다.

안영환은 안방준의 9대 종손이었으나 그가 살던 시기에는 종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다. 그는 선조의 관작을 복구하고 훼손된 서원을 복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경제력을 상실했던 전대의 상황을 이어받아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종가의 지위를 잃지 않고자 하였다. 종가에 소장된 다른 고문서를 통해 안영환의 이러한 행동은 문집 간행뿐만 아니라 문중 내부에서 벌어진 다른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결국 문집의 간행과 배포에 관한 종가와 지파간의 분쟁은 종가를 재건하는 과정 중에 종가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36) 「1867년 2월 寶城郡儒生 安樞 安樞 安相 上書」(〈표 1〉의 11번 문서).

“隱峰公文集之刊布 非但一門之盛舉 實爲士林之美事 其在子孫之列 宜其(足+曷)蹶竣役 而安樞之欺宗作鬧 不欲合秩 可謂名祖悖孫 門中罪人 門議齊發 猶不知悛 一向執拗 尤極無據 卽爲捉致 諭以義理 使之合秩于大溪書院 俾卽分傳以親先德 形止報來向事 本官 頓[印].”

37) 각주 12번 참고.

4. 맺음말

이상에서 안방준의 생애와 저술 및 간행활동, 그리고 『은봉전서』의 간행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종가와 지파간의 분쟁에 대하여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안방준은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난 후 16세가 되던 해에 향시를 보았으나 시험장의 난잡함으로 인해 과거를 단념하였다. 대신 박광전, 박종정, 성혼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충절과 도학으로 대변되는 자신의 학문과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저술을 하였다. 그의 저술은 대부분 국난이 발생했을 당시의 충절인물과 그 사실을 기록한 것과 여러 대신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을 담은 것이었다.

이후 안방준의 저술들은 1773년(영조 49) 안창현에 의해 『우산선생집』으로 간행되었고 1836년 안수록이 『우산선생집』에 수록되지 못한 글까지 합쳐서 교정하고 편차를 마친 후 1864년(고종 1)에 당시 보성군수 유건환의 도움에 힘입어 안방준의 9대 종손 안영환이 『은봉전서』의 간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은봉전서』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1864년(고종 1)과 1867년(고종 4) 두 차례 분쟁이 발생하였다. 1864년(고종 1)에는 간행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 문집간행소에서는 『은봉전서』를 간행하기 위해 여러 후손에게 비용을 배정하였으나 과가 다르다는 이유, 멀리 산다는 이유를 들어 납부 하지 않았다. 비용을 수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문집간행소에서는 수령에게 청원을 함으로써 비용을 거두고자 하였다.

당시 수령이었던 유건환은 간행 과정에서 비롯된 비용을 둘러싼 문중 내부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 문집의 간행을 도왔다. 이와 같이 『은봉전서』의 간행은 당시 보성군수로 재직 중이던 유건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유건환의 문집 간행의 역할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신이 부임한 지역의 인물을 선정하여 그의 저술을 간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방관이 부임한 지역의 인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문집을 간행한 것이 아니라 지방관의 사적인 관계에 따른 인물, 즉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교우 문인의 관계망에 해당하는 인물의 문집을 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건환은 자신의 선조와 교유했던 인물이었던 동시에 부임지의 인물을 선정하여 문집 간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사실로 볼 때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형태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간행비용을 둘러싼 문중 내부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방관은 문중 내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중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 하도록 유도하는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유건환은 문집의 간행을 주도한 측에서 간행비용을 받기 위해 청원을 올릴 때마다 적극적인 처분을 내려 비용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관의 권한이 사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1867년(고종 4)에 발생한 분쟁은 문집의 간행소가 분소되면서 합질하지 못해 배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지파의 일원이 종손 행세를 하여 문중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가운데 『은봉전서』의 서발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탄로가 나는 것이 두려워 고의적으로 합질을 지연시키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종손인 안영환은 전대에 기울어진 종가의 지위와 재건을 위해 『은봉전서』를 합질하여 배포하고자 관에 청원을 하여 지파의 행동을 저지 하였다. 그리고 대계서원에서 전부를 합질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쟁은 양측 모두 가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안방준의 9대 종손인 안영환은 경제력을 상실했던 전대의 상황을 이어받아 부단한 노력을 통해 종가의 지위를 잃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안령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게 될 뿐만 아니라 종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한편 안령은 그동안 서울에서 종가의 행세를 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므로 『은봉전서』가 간행되게 되면 그가 종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탄로 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가문의 모든 수모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었다. 이 분쟁은 종가의 지위를 둘러싸고 문집의 간행과 배포가 매개가 되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출판문화와 더불어 생활사적인 측면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본 연구는 고문서를 통해 문집의 간행과 관련된 분쟁을 통해 당시 지방 문중의 문집 간행 양상과 출판문화에 대한 일면을 살펴본 것이다. 다만 자료적 한계로 인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살펴볼 수 없었다. 특히 비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문집을 간행하는 데 있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문중에서의 문집 간행은 가문의 위상을 드높이는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였으며 간행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났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簡札, 通文, 所志類, 간행기록 등의 다양한 고문서를 통해 조선후기의 문집 간행과 출판문화에 대한 실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선비 안방준, 도를 묻고 의를 행하다』. 조선대학교박물관, 2010.
- 손계영. “성재선생문집간소용하기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 비용 분석.” 『고문서연구』 제46호(한국고문서학회, 2015). 177-204.
-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 문집 간행.” 『영남학』 제15호(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229-269.
-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 특히 조선시대의 문집 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39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365-394.

안동교 역주. 『국역 은봉전서』. 보성문화원, 2002.

옥영정. “지방목화자에 의한 문집의 인출에 관한 일고 -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
『서지학보』 제26호(한국서지학회, 2002). 69-92.

이해준. “은봉선생의 생애와 저술.” 『국역 은봉전서』. 보성문화원, 2002. 8-22.

장원연. “조선시대 개인문집의 간행과 교정.” 『서지학보』 제34호(한국서지학회,
2009). 59-83.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 본 족보 편간 과정상의 분쟁.” 『한국학논집』 44(계명대학
교 한국학연구원, 2011). 235-265.

한국학자료센터(<http://www.kostma.net/>) 보성 택촌 죽산안씨 고문서.

